

## 본 협의회 對政府 建議 내용 및 결과

〈國立大〉

건의 사항	건의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본부에 研究處 또는 研究課 設置</li> <li>• 大學 事務職의 대학교간 交流 活性化</li> <li>• 圖書購入費 확충</li> <li>• 收入 代替經費 예산 조기 확정</li> <li>• 企劃管理室長 보수 향상(處長級 特 3號俸)</li> <li>• 非營利 獎學法人의 택지 소유 허용</li> <li>• [大學]의 경우 學長으로 되어 있는 物品管理官을 庶務課長(4級)으로 지정</li> <li>• 公務員 定員 증원</li> <li>• 國立大學 豫算會計 운영의 自律性 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國立大學校 施設費特別法 제정</li> <li>— 豫算會計關係法을 개정하여 國立大學 포괄 豫算 會計制度를 도입하고 大學教育豫算會計 운영의 적절성 유지</li> <li>— 收入代替經費 적용범위 선정권을 教育部長官 또는 大學總(學)長에게 위임</li> <li>— 豫算의 轉用權을 教育部장관 또는 대학총</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國立學校 設置令 改正('92.3.6) “企劃室”→ “企劃研究室”로 개편, 企劃擔當官과 研究支援 擔當官을 書記官 또는 事務官으로 보임</li> <li>• 6級 이하는 당해 機關長間 合意로 가능</li> <li>• 전년도 對比 29.4% 증액, 5,349백만원→6,322백만원</li> <li>• 關係部處와 協議, 가급적 入試銓衡日 이전승인</li> <li>• 公務員 報酬規程 개정으로 大學校 企劃室長은 特 3號俸 조치('92.1.1)</li> <li>• 宅地所有 徵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獎學事業을 高유업무로 하는 非營利法人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宅地를 附與받을 수 있게 함('92.3.7)</li> <li>• 財産管理官, 歲入徵收官 등 여타 회계직 공무원을 포함하여 '92.3월중 조치</li> <li>• 國立的 各級學校에 두는 公務員의 定員에 관한 규정 중 改正令으로 '90년도 및 '91년도에 綜合大學으로 승격된 8개 대학교와 '92년도에  종합대학으로 승격되는 韓國海洋大學校 등에 필요한 인력 286명 증원('92.3.6)</li> <li>— 國立學校 施設特別會計法 제정 지속 추진</li> <li>— 經濟企劃院과 계속 협의</li> <li>— 收入代替經費 및 豫算의 轉用權 위임은 豫算會計法의 개정과 병행, 關係部處와 계속 협의 하여 장기적으로 추진</li> <li>— '93년도 정수관리 대상에서 5개 品目이 제외</li> </ul>

건의 사항	건의 결과
<p>(학)장에게 위임</p> <p>— 項目別 豫算制度 및 物品의 經手관리체제로 實驗實習 기자제 구입 곤란</p> <p>• 任用前에 教授로 근무한 總·學長이 停年 전에 퇴임할 경우 초·중등학교 교장의 경우와 같이 희망에 따라 講義 能力 및 健康을 參照하여 教授로 任用할 수 있도록 教育공무원법 제 24조 개정하여 근거조항을 신설</p> <p>• 國立大學 講師料  현실화</p> <p>— 國立大學의 '93년도 時間講師料를 시간당 15,000원 수준으로 책정, 예산에 반영</p> <p>— 超過 講師料의 경우도 시간당 10,000원 수준으로 증액하여 예산에 계상</p> <p>• '93년 國立大學(校) 政府 豫算支援 확대</p> <p>— 國立大學(校) 施設事業費 1,891억원(금년예산의 100% 증액) 예산에 반영</p> <p>— 國立大學(校) 期成會 教授研究補助費 440억원(금년기준금액의 100% 증액)을 전액 예산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教授의 月別 연구 보조비를 인상하여 줄 것을 건의함</p> <p>• “國立大 非法定機構 補職者手當 등 시정지시” 관련 建議</p> <p>— 國立大 非法定機構 보직자 수당지급에 따른 시정지시의 猶豫를 건의</p>	<p>되었으며 향후 國立學校 教育用 實驗實習 기자제는 經手관리 대상품목에서 제외토록 관계 부처(經濟企劃院, 調達廳)와 협의중</p> <p>• 總·學長으로 在職하다가 정년 전에 퇴임한 경우는 별도 措置 任用在 가능함</p> <p>— '93년도 예산에 講師料를 時間當 11,000원으로 '92년도보다 1,000원 증액 및 期成會 研究補助費 시간당 2,000원 증액(11,000원+2,000원+기성회 2,000원=15,000원)</p> <p>— 29억 원 확보</p> <p>— '93년도에 國立大學 施設事業費 1,891억 원을 經濟企劃院에 요구하여 96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족한 施設費는 지속적으로 확보(69억 원 증)</p> <p>— 研究補助費 인상은 유보</p> <p>— 계속 추진중(우선 月定 支給手當을 使用實費로 대체 처리)</p>

〈國立·私立大〉

건의 사항	건의 결과
<p>• 學科新設 및 學生定員의 조기 결정(1년 전 또는 8월 전까지)</p> <p>• 大學教授의 研究活動 강화를 위한 건의</p> <p>— 教育部 學術研究助成費의 확충을 위한 건의('92년 203억 원을 '93년 800억 원으로)</p> <p>• 大學評價 認定 結果의 합리적 활용</p> <p>— 大學評價 認定機關을 법률의 규정대로 大學 教育協議會로 일원화</p>	<p>• 전년도 8월 말까지 入學定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함</p> <p>— '93년도에 270억 원으로 증액</p> <p>— 향후 教育部 업무처리에 참고할 것임</p>

건의 사항	건의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大學의 지나친 等級化 지양, 大學評價 認定 결과 행정적·교육적 自律性 확대에만 활용</li> <li>—財政支援의 경우 우수대학은 보상적 지원, 그의 대학은 조성적 지원방식을 채택해 大學의 均衡的 發展을 유도</li> <li>• 學術研究助成費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2년도 學術研究助成費 예산 203억 원을 '93년도는 7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예산에 계상</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大學評定委員會 설치키로 합의</li> <li>—學術研究助成費 270억 원 확보</li> </ul>

〈私立大〉

건의 사항	건의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私立大學 운영비 國庫補助豫算 반영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私立大學 國庫補助 2,365억 원(專門大學 보조 500억 원 포함) 지원</li> </ul> </li> <li>• 大學區內 建築物 신축시 美術 장식품의 설치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에 대한 美術裝飾品의 설치는 권장사항(建築法 施行令 제27조 제3항에 불과하므로 서울시 條例의 획일적 강제규정은 무리이며 大學에 대하여 예외적인 규정 인정</li> </ul> </li> <li>• 大學校地內 開發制限區域의 해제 또는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學校 新·增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開發制限區域을 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關係法令 개정 또는 운용에 신축성 확대</li> <li>—建設部로 하여금 각 市·道에 大學用 건물에 대한 특별한 지침시달 요망</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私立大學 國庫補助 500억 원 확보</li> <li>—大學 캠퍼스의 특성과 財政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例外規程을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추진중</li> <li>—都市計劃으로 既造成된 學校用地內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도 學校施設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중</li> </ul>

〈教育大·産業大〉

건의 사항	건의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教育大學, 産業大學, 放送大學 운영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教育大學에도 여건이 갖추어진 경우 教育大學院을 설치하고, 教育法 제75조 제2항을 개정하여 教育大學(産業大學 및 放送大學 포함)에도 名譽敎授制 도입</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教育大學院을 설치하는 문제는 설치될 교육대학원의 性格, 教育課程, 敎科敎育專攻 敎授確保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중</li> <li>—教育大學에 名譽敎授制 도입 가능 (教育法 제75조의 개정)</li> <li>—産業·放送大學은 名譽敎授制 도입을 學則에 근거규정을 두어 실시 가능</li> </ul>

## □ 대학교수 國內交流 연구지원 계획

본 협의회는 주요 연례사업인 이 계획은 대학 간 협력과 학문교류 증진, 대학의 균형적 발전 유도, 교수의 학문발전과 연구의욕 고취, 공공기관 지원 연구과제의 효율적 수행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초빙을 희망하는 대학과 연구소가 타대학의 교수를 초빙하는 '초빙교류'와, 교류 희망교수가 타대학이나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그

기관에서 근무하는 '과견교류' 등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교류교수 지원자격은 조교수 이상으로 최근 5년 이내에 교류근무한 일이 없는 자이며, 교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전반기 : '93. 3. 1~'94. 2. 28, 후반기 : '93. 9. 1~'94. 8. 31), 6개월간 교류도 가능하다.

## □ 제16차 정기總會 개최 예정

본 협의회는 '93년 2월 5일(금) 여의도 63빌딩에서 제16차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총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 개회식(회장 및 교육부장관 인사말씀)
- 교육부와의 대화 및 전달사항
- 연구발표(총·학장 직선제 및 학생과의 대

화 결과)

- 교육부장관 초청 오찬
- 사업계획 및 예·결산 심의
- 대학 현안문제 협의—  
I 분과 : 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  
II 분과 : 사립대학 총장협의회

## □ 대학발전방안에 관한 教授—學生 세미나 개최

본 협의회는 대학발전연구위원회(위원장 조요한 숭실대 총장)는 지난 '92년 11월 20일, 21세기를 대비한 대학발전방안과 대학 현안문제의 해결방안을 탐색하기 위하여 교수-학생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는 대학발전연구위원 9명과 전국 33개 대학 총장이 추천한 교수 25명 및 학생 30명과 본 협의회 연구원 7명이 참석, 새로운 대학문화 창달과 대학의 면학풍토 조성방안에 관하여 건설적인 의견들을 격의없이 개진하였다. 이 세미나의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

되었다.

- 개회사……조요한(숭실대 총장)
- 주제발표 및 토론 :  
1. 새로운 대학문화의 창조를 위하여  
발 표 : 이돈희(서울대 교수)  
토론주제 : 장울병(성균관대 총장)
- 2. 대학교육환경의 개선방안  
발 표 : 박홍수(연세대 교수)  
토론주제 : 이상주(울산대 총장)
- 종합…주제 : 박홍(서강대 총장)